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□ 적용 지역

○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

2 **적용 기간**

○ 2021년 7월 1일(목) 0시 ~ 별도 안내 시까지

③ 방역 수칙

○ 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 중 대상 시설의 2단계 수칙 적용

- ※ 2021.7.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*는 실내·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 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하고,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**는 실외 다중 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
- 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- **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④ 법적 근거

○ 「**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**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- **제83조(과태료)**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 - 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「**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**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5 추진내용

-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 -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, **감염병 예방**을 위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모두 준수